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버팀목 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라면
1월 11일부터 “www.버팀목자금.kr”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세요~

지급신청

1차 지급신청 새희망자금을 기 지급받았거나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되어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신속지급	1월 11일~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새희망자금 기 수급자
	1월 25일~	연말특별방역 대상, 2020년 1~11월 개업한 일반업종 중 해당자 등
확인지급*	2월 중 (1월 중 별도 공고)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제출된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지급 / 증빙자료는 버팀목자금 신청사이트 내 '자주하는 질문'에서 확인

2차 지급신청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으로 선별된 소상공인(별도 공고)

신속지급	3월 중 예정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 중 2020년 신고매출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연매출 대비 2020년 연매출이 감소
확인지급		공동대표 사업체 등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하여 지급

1월 11일과 12일에 한하여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 기준, 홀짝제로 접수합니다.

문의

전화 상담 1522-3500 / 온라인 채팅 상담 www.버팀목114.kr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대상]

■ 공통요건

1.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매출액)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억원, 도소매 : 50억원, 제조 120억원 등)
(상시근로자수) '20년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인, 도소매 : 5인, 제조·운수 : 10인 등)
2.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3.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4.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5.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영업 중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가 11월 24일 이후 시행한 방역강화 대상 조치 업종의 소상공인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은 모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적용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등	숙박시설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위반사실 확인 시 환수

■ 일반 업종

'20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19년 이전 개업)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감소(부가세 신고 기준)
- ('20년 개업) '20년 11월30일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보다 감소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일 마감)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 지원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 '21.1월 이후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 **휴·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 소상공인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제도전장령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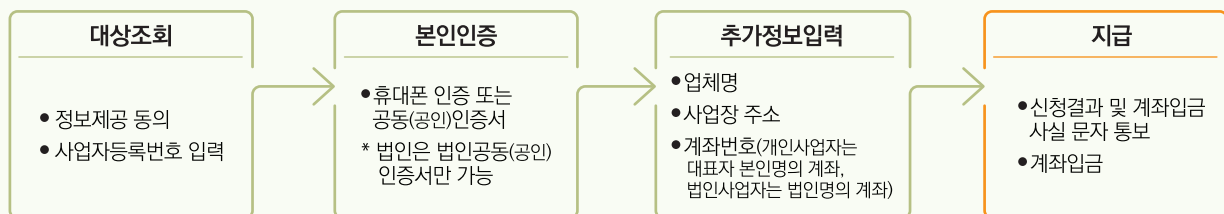


[지원금액]

구분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일반업종
지원금액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신청절차 | 온라인신청]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유의사항]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 버팀목자금을 수급한 경우 **고용 취약계층 생계안정자금 지원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